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82
----------	------

발의년월일 : 2008. 5. 13.
발 의 자 : 이기환 의원 외 7인

□ 제안이유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공포, 2008. 7. 1.시행)되어 시행되나,
-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함.
 -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합산(구분)하여 고지하고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보험료 통합 징수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 2008년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분리고지, 분리납부 불가)됨에 따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고유목적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조).
 - 안산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10,500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의 경감 또는 면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405로 한다(장기요양법 시행령 제4조).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예산수반사항 : 12,540원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액>

대상자	산출내역	비용
계	12명 × 6개월 =	12,540원
차상위 장애인 (월보험료9,650원인 자)	40원 × 6개월 × 1명	240원
차상위 장애인 (월보험료9,690원인 자)	80원 × 6개월 × 2명	960원
차상위 한부모가족 (월보험료9,820원인 자)	210원 × 6개월 × 9명	11,340원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 “보험료”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모부자세대를” “한부모가족을”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u>	<u>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u>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에게 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u></p> <p><u>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u></p> <p>②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4조(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제5조(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u></p> <p><u>제9조(상호협력)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u></p> <p><u>제10조(심의·의결)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u> <u>보험료</u></p> <p><u>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u></p> <p>②<u>한부모가족을</u></p> <p><u>제4조(지원범위) 보험료</u></p> <p><u>제5조(시기)</u> <u>보험료</u></p> <p><u>제9조(상호협력) 보험료</u></p> <p><u>제10조(심의·의결)</u></p>